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❍ 이 규칙 상설위원회 중 그 직능으로 정한 사항의 조사, 연구 및 그 개선방안의 심의가 종료된 미래사법자문위원회, 헌법자문위원회, 사법정보화자문위원회, 사법국제화자문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❍ 상설위원회 중 미래사법자문위원회, 헌법자문위원회, 사법정보화자문위원회, 사법국제화자문위원회를 폐지함(안 제2조제1항)

❍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직능 변경(안 별표 1)

4.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

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규칙 제　　호　　2021. . . 공포

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을 “법원행정처에 통일사법연구위원회를 둔다.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　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 지

[별표 1]

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직능

위 원 회 명	직 능
통 일 사 법 연 구 위 원 회	1. 북한법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2. 통일 대비 사법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3. 외국의 통일 관련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4.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하거나 위원이 안건으로 제출한 사항

신·구조문대비표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제2조(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)
① 법원행정처에 미래사법자문위원회, 헌법자문위원회, 통일사법연구위원회, 사법정보화자문위원회 및 사법국제화자문위원회를 둔다.
② (생 략)

[별표 1]

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직능

<table>
<tr><th>위원회명</th><th>직 능</th></tr>
<tr><td>미래사법자문위원회</td><td>1. 사법행정제도에 관한 사항
2. 법원의 예산, 시설, 도서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3. 판사 및 법원공무원의 인사·교육에 관한 사항
4. 사법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
5.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하거나 위원이 안건으로 제출한 사항</td></tr>
<tr><td>헌법자문위원회</td><td>1. 사법정책 및 재판제도 설계·운영에 관한 헌법적 고려사항
2. 대법원규칙, 예규의 헌법적 타당성에 관한 사항
3. 기본권 보장 확대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
4. 국제인권규범의 사법정책 및 재판제도 반영에 관한 사항
5.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하거나 위원이 안건으로 제출한 사항</td></tr>
<tr><td>통일사법연구위원회</td><td>1. 북한법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
2. 통일 대비 사법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
3. 외국의 통일 관련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
4.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하거나 위원이 안건으로 제출한 사항</td></tr>
<tr><td>사법정보화자문위원회</td><td>1. 사법정보화 제도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
2. 사법정보화 사업 및 예산에 관한 사항
3.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하거나 위원이 안건으로 제출한 사항</td></tr>
</table>
</td><td>제2조(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)
① -------- 통일사법연구위원회를 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[별표 1]

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직능

<table>
<tr><th>위원회명</th><th>직 능</th></tr>
<tr><td>통일사법연구위원회</td><td>1. 북한법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
2. 통일 대비 사법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
3. 외국의 통일 관련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
4.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하거나 위원이 안건으로 제출한 사항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사법국제화자문위원회	1. 국제사법교류에 관한 사항 2. 사법제도의 해외 전파 등에 관한 사항 3.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등에 관한 사항 4. 국제관계에서 사법부 구성원의 역량 및 기여도 제고에 관한 사항 5.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하거나 위원이 안건으로 제출한 사항

〈의안 소관 부서명〉

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216